



### 주요 내용 :

#### 01. 조세 관리

- 개인 및 가족 비즈니스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 관리

#### 02. 법인소득세

- 지원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베트남 Covid-19 예방 백신 기부금  
처리 방안
-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급여처리

#### 03. 이전가격

- 제 45/2021/TT-BTC 호 시행 규칙 :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기업의 조세  
관리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적용 안내
- 대출 자본금에 따른 특수관계자 결정

#### 04. 부가가치세 및 계산서

- 투자프로젝트 양도 시 VAT 면제  
계산서의 발행.
- 판매자명 오류 전자 계산서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소 가능.

#### 05. 외국인계약자세

- 임가공 계약에 대한 FCWT
- 국제 운송에 대한 FCWT
- 계약위반 시 보상에 대한 FCWT

#### 06. 무역 및 관세

- 관세총국의 시행령 18/2021/NĐ-CP  
("제18호 시행령) 실행에 대한 지침
- 수출가공기업 ("EPE") 으로 전환된  
기업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처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른 전자  
발급 원산지 증명서 (e-P/O)의 인정.

## 조세 관리



### 신규 규정

#### 개인 및 가족비지니스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 부가가치세 ("VAT") 및 조세 관리 안내

재무부는 2021년 06월 01일 제 40/2021/TT-BTC 호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으며, 개인 및 가족비지니스에 대한 VAT, PIT 및 조세 관리를 안내한다.

제 40/2021/TT-BTC 호 시행 규칙을 적용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법령 규정에 따른 개인 및 가족비지니스, 특히 전자무역업과 사업 협력 계약 ("BCC")도 포함한다.
- 국경시장, 국경검문소 시장, 베트남 영토의 국경관문 경제구역 시장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가족비지니스;
-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
- 베트남 국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 ".vn"을 사용하는 개인;
- 개인과 사업 협력단체;
-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 또는 납부하는 단체, 개인 등

본 시행 규칙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 사업자등록 및 지침 문서 또는 개정, 보완, 대체(있는 경우)에 관한 정부의 2021년 01월 04일 제 01/2021/ND-CP 호 시행령 제 79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족비지니스"는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등록되어 설립된 생산 및 사업체이며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자산을 책임진다.
- VAT 및 PIT 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종류가 추가되었다.
- 개인 및 가족비지니스의 신고 방식에 따른 세금 납부 규정이 추가되었다.

본 시행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유효하다.

(재무부의 2021년 06월 01일 제 40/2021/TT-BTC 호 시행 규칙)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 신규 규정

#### 지원산업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2021년 6월 4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산업 인센티브 인증서("SI Certification")를 취득하고 지원산업 ("SI") 제품을 생산한 프로젝트의 법인세 ("CIT")에 관한 제218/2013/ND-CP호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는 제57/2021/ND-CP호 시행령 ("제57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은 2021년 6월 4일부터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의 2021년 6월 15일 세무뉴스를 참고바랍니다.)

#### 베트남 Covid-19 예방 백신 기금 ("VFVC")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자발적 기부

VFVC에 대한 자발적 기부, 지원 및 기부금은 제44/2021/ND-CP호 시행령 및 개정, 추가 조항 (있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면 CIT확정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재무부의 2021년 06월 02일 제41/2021/TT-BTC호 시행 규칙)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 지침 문서

####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급여

2021년 5월 20일 호치민시 노동조합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제45/2019/QH14호 노동법 제113호 3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OL을 공표하였다.

2021년 1월 1일 (2019년 노동법 유효일)부터 기업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직원이 계속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노동법 2019 조항 및 위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근무하고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할 보상비용은 법인세 비용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호찌민시 노동조합의 2021년 5월 20일 제 344/LDLD-TC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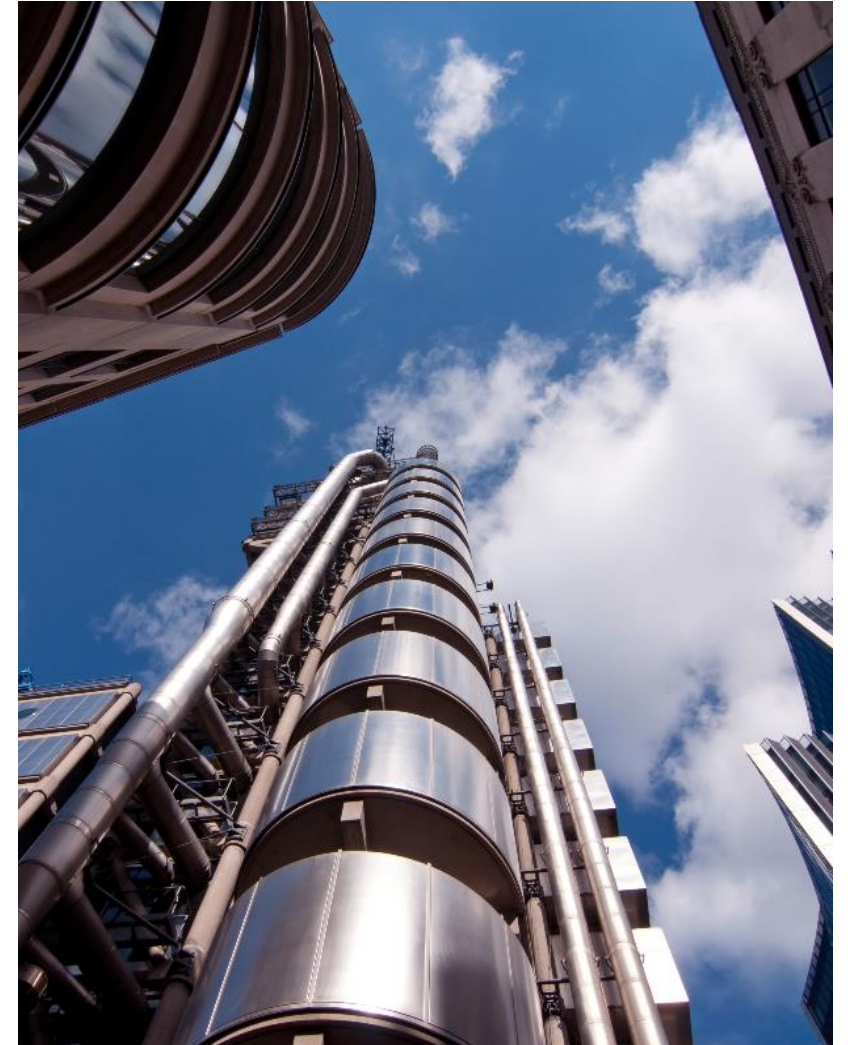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이전가격



### 신규 규정

**제 45/2021/TT-BTC 호 시행규칙은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 관리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 (APA) 적용을 안내한다.**

2021년 6월 18일,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적용 지침에 대한 제 45/2021/TT-BTC 호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 규칙은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APA 적용 가능 거래
2. APA 적용 규칙
3. APA 적용시 필요 정보
4. APA 내용의 평가, 교환, 협상
5.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6. 세무당국의 권리 및 의무
7. APA의 유효기간
8. 실행

체결된 APA의 유효 기간은 최대 과세연도 3 년이지만 납세자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실제 연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본 시행 규칙은 2021년 08월 03일부터 발효되며 제 201/2013/TT-BTC 호 시행 규칙을 대체한다.

본 시행 규칙 발효일 이전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체결되지 않은 APA신청서이고 신청 시간이 본 시행 규칙의 발효일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관리법 제 126/2020/ND-CP 호 시행령 및 본 시행규칙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의 2021년 6월 25일 세무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웹 사이트에 대한 안내

#### 대출 자본금에 따른 특수관계자 결정

기업 협회 및 지방 세무당국이 대출 비율에 따른 특수관계자 결정 기준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5월 28일에 세무총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출 자본금에 따른 특수관계자 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공표하였다.

이전 가격의 형태에 관한 제 132/2020/ND-CP 호 시행령 제 5조 2항 d 점에 따르면 :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기업에 자본금을 보증하거나 대출합니다(특수관계자의 금융 자원 및 유사한 금융 거래에서 보증된 제 3자로부터의 대출 포함). 단, 대출금액은 차입기업 소유주 출자 자본의 25% 이상이고 차입기업의 장기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조건이다.”

참고로 본 규정은 제 20/2017/ND-CP 호 시행령 제 5조, 2항, d 점 및 제 66/2010/TT-BTC 호 시행 규칙 제 3조, 4항, e 점에서도 이미 도입되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은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도 기업의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어 해당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준수 사항을 수행하고 기업의 대출과 관련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은 규정 상한선에 적용된다.

(세무총국의 웹사이트 - 2021년 5월 28일자 뉴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 지침 문서

**투자 프로젝트 이전은 VAT 과세대상 아니지만 여전히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투자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은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5.4 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타사에 게 프로젝트를 이전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이전 조건이 충족되며, VAT 적용 대상인 제품을 제조하면 프로젝트 양도자는 프로젝트를 이전할 때 VAT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양도자는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판매가격 사항에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며, 부가가치세율 및 총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 부록 4, 제2.1조)

(하노이 세무당국의 2021년 6월 11일 제20844/CTHN-TTHT 호 OL)

**판매자명 오류 전자 계산서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소 가능**

기업은 사업등록증에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전자서명란에 회사명을 아직 변경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에 대한 판매자 정보를 잘못 기재하게 된 경우 제32/2011/TT-BTC호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아직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및 재발행 할 수 있다.

(하노이 세무당국의 2021년 6월 11일 제20855/CTHN-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 지침 문서

#### 임가공 계약에 대한 FCWT

본 OL는 외국법인은 베트남에 있는 기업과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고,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Incoterms에 따라 임가공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안내한다.

가공 후 외국 법인으로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FCWT 부과되지 않는다.

(박짱 세무당국의 2021년 6월 10일 제2552/CTBGI-TTHT 호 OL)

#### 국제 운송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로 재품을 운송하여 수익이 발행하는 경우 FCWT 부과되어야 한다.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직접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법인은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FCWT를 공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VAT:
  - 국제 운송의 경우: VAT 공제 필요하지 않음.
  - 국내 운송의 경우: 과세소득에 대한 3% 해당함.
- CIT: 과세소득에 대한 2% 해당함.

(롱안 세무당국의 2021년 6월 4일 제No.1734/CT-TTHT 호 OL)

####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수익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위반으로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 수익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FCWT가 부과된다.

외국인계약자가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 적용하는 방식 또는 일반 세율로 신고된 수익 및 비용에 근거하여 CIT를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하노이 세무당국 2021년 5월 20일 제17152/CTHN-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관세총국의 시행령 18/2021/NĐ-CP (“제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지침

제18호 시행령 실행을 위한 지침 문서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

수출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에 대한 지침

수출가공기업 (“EPE”)에 대한 세관감사, 감리 조건에 대한 제28a조 실행을 위한 지침

내륙 수출입 활동에 관한 주목할 만한 내용

(관세총국의 2021년 6월 01일 제 2687/TCHQ-TXNK 호 OL -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의 2021년 6월 11일 세무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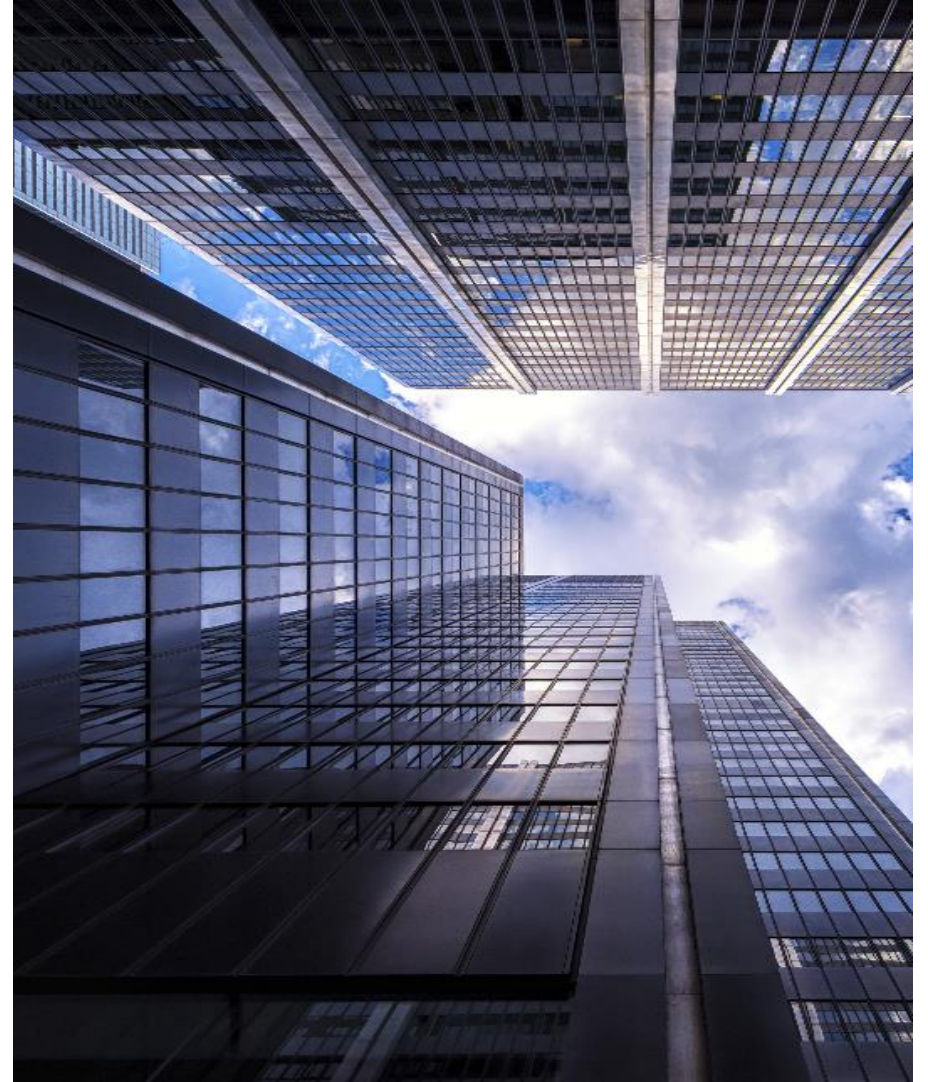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수출가공기업 ("EPE") 으로 전환된 기업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처리

제 107/2016/QH13 호 수출입  
관세법의 제19조 1.b항에 따르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는 환급된다.

기업이 EPE로 전환하여 수출품  
제조에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언급된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관세 환급 대상 결정에 대한  
조건은 제 134/2016/ND-CP 호  
시행령의 제36조 3항에 따른다.

수입관세 환급 절차는  
제06/2021/TT-BTC호 시행규칙의  
제12조에 따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5월 27일  
제2551/TCHQ-TXNK 호 OL)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 PP") 및 유럽연합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에 따른 전자 자체 발급 원산지 증명서 (e-P/O)가 인정된다.

관세총국 지침에 따라, EVFTA 및  
CPTPP에 따라 REX 코드가  
있으며, EUR 6,000 이상의 가치  
있는 수입품의 경우, e-P/O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룹의 내부  
관리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수입업체에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해당 e-P/O는 관세총국 E-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수입업자가 관세총국 E-시스템을  
통해 자체 발급된 e-P/O를 제출한  
경우, 수입 신고 단계에서 P/O의  
하드카피 버전이 필요하지 않다.

(관세총국의 2021년 5월 31일  
제2669/TCHQ-GSQL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Kim Min Je**  
**KSG Manager**  
+84 90 218 5562  
mkim21@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